

제품의 판매 및 운송에 대한 표준 약관

1. 적용

1.1 본 약관은 거래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서면합의로 본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본 약관과 상충되는 구매자 측의 특정 조건은 LINAK Korea의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LINAK Korea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단, LINAK Korea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본 약관에서의 정의;

- 구매자 : LINAK Korea로부터 LINAK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 LINAK Korea : 한국에서 LINAK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며 덴마크 소재 LINAK A/S의 자회사이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 해석상 본사인 LINAK A/S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LINAK A/S를 포함하여 LINAK Korea라 지칭한다.
- 제품 : LINAK Korea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을 말한다.

2. 발주

2.1 LINAK Korea는 Order Confirmation 혹은 다른 방법 (포괄하여 "오더확인서"라 함)을 통하여 서면으로 구매자의 발주 내용을 구매자에게 재 확정할 수 있다.

2.2 LINAK Korea의 "오더확인서" 내용이 구매자의 발주서(혹은 발주내용)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즉시 LINAK Korea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동 이의제기에 실패한 경우 구매자는 "오더확인서" 내용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간주 된다.

2.3 견적서, Pro-forma Invoice 등은 "오더확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2.4 확정된 발주(오더)는 LINAK Korea의 서면 동의 없이는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없다. 구매자는 발주(오더)의 취소 혹은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된 합리적인 제반 비용을 LINAK Korea에 보상하여야 한다.

3. 인도(납품) 조건

3.1 제품의 인도 조건은 구매자와 LINAK Korea가 합의하여 정한다.

3.2 LINAK Korea는 기한 내 제품의 인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구매자가 LINAK Korea가 LINAK 본사와 협의하여 정한 통상의 납기보다 단축된 납기를 요구하는 경우, LINAK Korea는 납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이 경우 구매자는 동 납품지연을 이유로 발주(오더)를 취소할 수 없으며 LINAK Korea에 어떠한 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세금과 공과

4.1 제품 관련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한 인도(납품) 조건에 부가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과 공과금 및 구매한 제품의 승인 관련한 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5. 가격

5.1 제품의 가격, 납기, 인도조건 등은 최종 발주(오더)전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LINAK Korea의 견적서를 구매자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된다.

6. 대금 지급

6.1 대금은 당사간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품 인도 즉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대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LINAK Korea는 향후 물량의 인도 유보는 물론이고 동 지체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월 2%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지체된 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법적 혹은 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LINAK Korea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토록 청구할 수 있다.

6.3 구매자가 LINAK Korea에 주장한 어떤 클레임에 대해 LINAK Korea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 클레임의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동 클레임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6.4 구매자가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정된 일자에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은 지정된 일자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소유권

7.1 인도된 제품에 대해 대금지급 완료시까지의 비록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자 소유의 타 물건에 장착했다라도 동 제품의 소유권은 LINAK Korea가 보유한다.

8. 지적재산권

8.1 LINAK Korea는 제품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는 제품을 copy 하거나 Copy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도면이나 사양 등은 LINAK Korea의 소유이며, LINAK Korea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혹은 보여줄 수 없다.

8.2 상기 8.1항을 위반한 경우 구매자는 LINAK Korea에 하기와 같이 보상한다.

1) 불법 복사(Copy)에 기인한 모든 손해의 보상 2) LINAK Korea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소송 관련한 모든 비용 3) LINAK Korea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법적인 행위 관련한 모든 비용.

8.3 구매자의 사양 혹은 요구사항에 근거한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제3자가 구매자의 사양 혹은 요구사항에 기인하여 LINAK Korea에 대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소송비용 및 모든 손해로부터 LINAK Korea를 면책하여야 한다.

9. 기술적 변경과 승인

9.1 LINAK Korea는 양 당사자 간에 기 합의된 기술적 사양에 대한 변경이 아닌 한, 기 발주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기술적인 변경 혹은 기타 변경을 할 수 있다.

9.2 카달로그 혹은 기타 인쇄물상의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재에 대해 LINAK Korea는 책임이 없다

9.3 LINAK Korea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자는 LINAK 제품의 적용, 사용 및 운전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와 원자력 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9.4 구매자는 LINAK Korea의 제품이 사용(부착)되는 모든 구매자 자신의 제품에 대해 국내·외의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클레임

10.1 인도된 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하자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도 즉시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10.2 구매자는 제품을 인도 받은 즉시 수량, 하자 혹은 계약사항과 상이점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상기 검사 과정에서 어떤 하자 혹은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구매자가 LINAK Korea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제품 인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0.3 공장인도(혹은 창고 인도) 조건, 즉 EX-Factory 조건인 경우에는, 구매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해서 LINAK Korea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시 운송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11. 하자 보증

11.1 인도된 제품의 보증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불만을 접수한 경우,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 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수선해 준다. 각 제품의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한 바에 의한다.

11.2 제품에 디자인, 재료 혹은 생산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LINAK Korea에 불만을 접수하여야 하고,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LINAK Korea 혹은 LINAK Korea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운임과 보험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또한 반환 사유를 동봉하여야 한다. 동 제품이 하자 있는 것으로 LINAK Korea에 의해 판명되고 또한 구매자가 보증기간 내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LINAK Korea는 신규 교체품 혹은 수선한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구매자가 하자 제품을 LINAK Korea로 발송시 지불한 운송비용을 보상한다.

11.3 LINAK 제품의 특정 분야(제품)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구매자 책임이다.

11.4 LINAK Korea는 어떠한 경우에도 LINAK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설치된 LINAK 제품을 직접 제거, 교체 혹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 보증정책에 의한 재 공급, 수선 등의 경우에도 LINAK Korea의 사업장내에서만 수행한다.

12. 제조물 책임

12.1 LINAK Korea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제조물 책임(PL)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규에 규정된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하자 있는 LINAK 제품으로 야기된 구매자 혹은 고객의 운영 손실, 이익 손실 및 기타 간접적인 손실 등에 대해 LINAK Korea는 책임이 없다.

12.2 LINAK Korea가 상기 12.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부분 관련, 구매자는 제3자의 동일한 손해 혹은 손실 주장에 대하여도 LINAK Korea를 면책하여야 한다.

13. 불가항력

13.1 하기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각 당사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 파업 혹은 각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즉 화재, 전쟁, 군사적인 동원, 압수 및 징수, 통화 제한, 폭동, 운송수단 부재, 일반적인 상품 결핍, 상기 사유로 인한 부품공급 지연 등.

13.2 상기 13.1항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합의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에 한한다.

13.3 상기 13.1항의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점과 종료시점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4. 비밀유지

14.1 사업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입수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비밀 정보 및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유지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5. 준거법 및 장소

15.1 LINAK Korea와 구매자 간의 분쟁 혹은 불일치는 한국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15.2 중재 또는 소송행위는 LINAK Korea의 주소지 관할권에 의한다.

2012년 11월

(주) 리낙코리아(LINAK Korea Ltd.) 대표이사 박 삼 락

